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나윤경
	담당부서 (과)	특수거래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남동일		연락처	044-200-4432
	과장	편유림		이메일	kftc_i533@mail. go.kr

2023. 05. 3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								
	2.규제조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3.위임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6.14~2023.07.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반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함								
	7.규제내용	영업정지 처분기준 중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번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선불식 할부거래업자</td><td>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								
9.규제목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반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바,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신산업 · 신기술 관련 우선허용 · 사후규제 적용 비대상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u><신 설></u>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u>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자동이체 등의 형식으로 재화 공급 이전에 장기간(5년~20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큰 분야임

* 선불식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선지급하고 장례·여행 등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의미

-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들과 달리 ‘반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범자가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간을 알 수 없었음

-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시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올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 △가입 소비자 757만명(2022년 9월말 기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 반복의 판단기준이 너무 단기이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
- ☐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 반복의 판단기준이 너무 장기이므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법 위반행위자가 양산될 우려
-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유사 법률들(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서도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할부거래법령에서도 3년

을 기준으로 함이 적절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규제목표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반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바,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업정지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 기준으로서 3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유사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서도 3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방문판매법은 3년 이내에 2번 이상 같은 법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법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가능한 반면 할부거래법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 제34조제1호~제3호, 제7호~제9호 및 제12호와 관련하여서만 영업정지가 가능하여 사실상 매우 제한적으로 영업정지가 가능*한바, 방문판매법 보다는 전자상거래법처럼 1번 이상 같은 법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함

- 기간이 아닌 다른 정성적인 기준에 비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영업정지 기준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대한 것인바,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필요성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기준을 1년으로 하는 경우 반복의 판단기준이 너무 단기이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복의 판단기준이 너무 장기이므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법 위반행위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바 3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본 규제는 기술기준(기술규정),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사업자간 차별성이 없으므로,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사업자가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경제산업대신이 영업정지 명령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타법사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방문판매법」 제49조제4항에서도 법 위반행위 반복에 따른 영업정지시 그 기준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방문판매법상 관련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1. 4. 20.>

1.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조의2, 제8조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2조 제2항,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특수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이며, 이제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 사례가 1건에 불과한바, 피규제자들의 규제 준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에 관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집행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영업정지 기준 구체화와 관련하여 추가 소요될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3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23.3~5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방안 검토 및 보고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기간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제도 시행 후 사회적 영향 모니터링(지속)

3. 종합결론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반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바,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